

검토의견서

【행정지원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

1. 제안이유

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함

나. 성북구청의 위치를 현재 도로명주소로 수정함(안 제2조)

○성북구 삼선동 5가 411번지 → 성북구 보문로 168(삼선동5가 411번지)

3. 검토의견

지방자치단체의 경우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,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현재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개정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
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,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④~⑨ (생략)